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
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경 상 북 도 의 회

(김대진 의원 외 9명)

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

(김대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470

발의연월일 : 2023. 12. 11.

발 의 자 : 박규탁・백순창・정경민 윤종호・김용현・강만수 황명강・노성환・박선하 김대진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❍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, 안건심의 등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

❍「지방자치법」제51조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·경상북도 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임

2. 주요내용: “붙임” 출석요구서

❍ 출석요구 일시

-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
  - 회기(안): 2024. 1. 25.(목) ~ 2. 2.(금), 9일간

  ※ 의사일정이 변경될 경우 출석일시는 변경된 의사일정을 따름

❍ 출석장소: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

❍ 출석범위: 경상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

3. 관계법령 발췌: 붙임

4. 발의의원 서명부: 붙임

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서

「지방자치법」제51조제2항에 따라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업무보고, 안건심의 등에 따른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 경상북도지사·경상북도교육감 및 관계 공무원의 본회의 출석을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.

□ 출석일시

❍ 제344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회의 개의일

- 회기(안): 2024. 1. 25.(목) ~ 2. 2.(금), 9일간

※ 의사일정 변경으로 본회의 개의일이 추가 또는 변경될 경우 추가 및 변경된 날을 출석일시로 함

□ **출석장소**: 경상북도의회 본회의장

□ **출석범위**: 「경상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공무원

□ **출석요구 이유**: 업무보고, 안건심의 등에 대한 답변

관계법령 발췌

□ 지방자치법

제51조(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답변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·답변하여야 한다. 다만,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·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은 조례로 정한다.

□ 경상북도의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

제2조(범위) 경상북도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·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임원은 상임위원회로 한정한다.

1. 도지사, 교육감
2. 부지사, 부교육감
3. 도지사 및 교육감의 보조기관 중 실·국장, 담당관, 실·과장급
4.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
5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에 따른 교육기관의 장
6.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4조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장(교육장)
7. 제4호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도본청의 실·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

8. 제5호에 따른 교육기관 및 제6호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교육감의 보조기관 소속 실·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
9. 법 제163조와 「지방공기업법」 제49조·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임원
10.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출자·출연 기관의 임원
11.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15조 및 제20조에 따른 학교안전공제회의 임원

□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

제81조(도지사 등의 출석요구) 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발의는 10명 이상 의원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

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으면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하여 답변하여야 하며, 도지사나 교육감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충실한 답변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.

발의의원 서명부(제344회 임시회)

(제명 : 경상북도지사 및 경상북도교육감 등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)

의 원 명	서명 또는 사인	비 고
박규탁		
백순창		
정경민		
[illegible]		
김용현		
강만수		
황명강		
노성환		
박선하		
김대진		

※ 서명: 본인 고유의 필체로 자신의 이름을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씀(서명 시 정자로 기입)